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0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김준혁 · 서삼석 · 송재봉
정준호 · 조승래 · 진선미
염태영 · 서미화 · 김남희
손명수 · 김문수 · 안호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대형 구분상가들의 공실률이 80%~90%에 달하고 분양사나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전기와 수도마저 끊겨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상가 소유주들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어 해당 소유주들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처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재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경우 상가건물의 유지·관리 포기로 건물 노후화 및 지역 상권 환경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로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여 장기 공실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7조의7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1절에 제167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7(장기공실상가에 대한 감면)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공실상가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7조의7(장기공실상가에 대한 감면)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고 있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사용 또는 수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등 납세의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u>

	<u>을</u>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